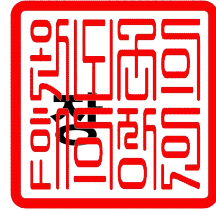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2. 발 의 자 : 김 양 훈 의원

3. 제정이유

-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제4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안 제5조, 제6조)
- 협력체계(안 제7조)

5.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10. 1. ~ 2025. 10. 10.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느린학습자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